

충청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국기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3년 8월 28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30일

3. 제안이유

-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상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가.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(안 제5조)
- 나. 자율상권조합 사업 지원 및 결과보고(안 제6조 및 안 제7조)
- 다. 충청북도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(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)

가. 제출배경

- 코로나19 발생 3년을 거치며 전국적으로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상권이 몰락하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구조가 재편되면서 대대적 상권지각변동이 일어남

-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전통시장과 구도심 상가들은 직격탄을 맞았고 지금까지도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
-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‘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’ (이하 지역상권법)이 시행 된지도 1년이 지남
- 지역상권법의 주요 골자는 기존 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’ 과는 별개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라는 취지를 담아 지원 대상인 상권을 △지역상생구역 △자율상권구역으로 구분하여 상권 특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

나.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본칙 14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
-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 조항으로, 지역상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을 밝힘
-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한 것으로, 지역상권,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등의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의 범위를 정함
- 안 제3조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구체적인 시책이 마련되도록 함
- 안 제4조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별 기본계획을 3년마다,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매년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정립하도록 함

- 안 제5조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
- 안 제6조는 자율상권조합의 각종 사업지원을 통해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세부시행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- 안 제7조는 자율상권조합의 매년도 사업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사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함
- 안 제8조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청년상인 및 청년창업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안 제9조는 지역상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
- 안 제10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민간 전문가의 위촉을 통한 위원회 운영으로 도정의 시의적 대응을 위한 효율성을 담보하였고, 부위원장을 호선으로,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추천을 두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함
- 안 제11조는 위원의 임기와 연임에 대한 사항, 사임 등의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
- 안 제12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과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- 안 제13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
- 안 제14조는 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, 협력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도모함

다. 종합의견

- (필요성)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, 지역상생 발전 및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
- (절차적 타당성) 관련 법규에 따라서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음
- (법적합성) 충청북도의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고 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각종 사업을 촉진, 도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에 근거하여 조례안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됨